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기업·준정부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7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3
1. 공기업·준정부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 (안 제28조)	3
2. 부칙 검토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상혁의원 등 19인

나. 발 의 일 : 2024. 6. 24

다.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때 임원의 임기는 기관장의 경우 3년, 이사와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하면서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서로의 임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는 반면, 신임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존 임원의 용퇴를 유도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방자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사례도 있음.

이에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28조).

Ⅲ. 검토의견

1.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 (안 제28조)

현 행	개정안
○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임기 - 3년 - (신 설) -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임기 - 2년 - ‘대통령이 임명한 직위의 기관장’ ¹⁾ 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 - 1년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2년 -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현행과 같음) - 1년에 한하여 연임 가능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과 제26조 단서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을 말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법 제24조제3항 본문, 법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자산규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을 포함한다)가 1조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②법 제24조제3항 본문, 법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유형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2024년도 공공기관은 총 327개(2023년 347개)로 공기업 32개(시장형 14, 준시장형 18), 준정부기관 55개(기금관리형 12, 위탁집행형 43), 기타공공기관 240개로 구분됨.²⁾

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³⁾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와 감사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직위의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7.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2) 2024년도 공공기관 현황[참고3]

3)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제외

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대통령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 종료일을 맞추려는 것임. 또한, 임원(기관장 및 이사·감사)의 연임을 현행 1년 단위(연임 가능)에서 1년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임명 절차 등]

구분	임명 절차	대통령 임명	주무기관의 장 임명	기타 (이사회 및 주총)
공기업 32개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무기관 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다만, 영§21①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기관장 임명	29개 (예시) 한국도로공사, 발전5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예시)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 시개발센터, 한국방송광고진 흥공사	-
준정부 기관 55개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주무기관 장 임명 다만, 영§22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 임명	41개 (예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 국민연금공단 등	14개 (예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 전공단	-
기타 공공 기관 240개	대통령·주무기관의 장·이사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개별설치법 및 기관 정관으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한 경우가 있음.	16개 (예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145개 (예시)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79개 (예시)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

자료: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

첫째, 새로운 대통령이 자신과 철학을 공유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음.

둘째, 현재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행적으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교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실과 법 규정 간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반면,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

첫째, 대통령의 임기와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연계하는 경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위를 할 유인이 생길 수 있음.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대통령과의 정책 철학의 공유보다는 자율·책임경영 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및 전문성 있는 경영이 더 중요한 요소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교체하는 것은 불합리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감사의 연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함.

첫째, 개정안과 같이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임명된 기관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 임기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장의 법적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둘째,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와 감사의 연임을 기관장과 같이 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임기와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관의 경영 관련 안전을 심의 의결하는데 이사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연계시켜 국정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측면도 있겠으나 이사도 기관장과 함께 대통령의 임기와 연계시킬 경우 이사회의 업무공백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감사는 기관의 경영목표, 예산 등을 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⁴⁾이 아니고, 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역할⁵⁾이므로 대통령의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성) ①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

1.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이나 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

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될 당시 재직 이사의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한정한다.

3. 제2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②·④(생략)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⑤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임기와 연계시키는 것은 오히려 감사업무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기관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⁶⁾를 구성하고 있는바 감사(監査)라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대통령 임기 연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의 공기업·준정부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연계함으로써 대통령 교체 시기의 공공기관 운영상 갈등을 방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일괄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교체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 부정적인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이 경우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사기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상법」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원) ①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제20조(위원회) ①공기업의 이사회는 그 공기업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기업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개정 2009. 12. 29.>

③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④ · ⑤ (생략)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정철학 공유와 정부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과 대통령과의 임기 연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공운법 체계상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보장과 경영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기관장 임기를 보장하고 있고 정부 교체 시기마다 기관장을 일괄 교체할 경우, 잦은 기관장 교체에 따른 사업 연속성 저해, 행정비용 발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국내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의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대구광역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⁷⁾를 2022년 7월에 제정하였고, 이후 일부 자치단체⁸⁾에서 임기 일치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는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정치적 임명의 대상이 되는 미국 정부의 직위를 명시한 ‘Plum Book⁹⁾’이라는 책자를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와 하원 감독·개혁위원회가 번갈

-
- 7)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시행 2022.07.29.] (제정) 2022-07-29 조례 제5807호
제5조(임기) ① 시장이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 8) 대전시, 울산시, 충청도, 광주시, 부산시, 경남도, 창원시, 이천시, 용인시, 오산시, 안산시 등
- 9) 정식 명칭은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이나, 통상 이를 ‘Plum Book’이라고 부르며,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the Senat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하원 감독·개혁위원회(the 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Reform)가 4년마다 번갈아 가며 발행(인사관리처가 지원)하고, 매 4년마다 대통령 선거 직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연방정부 직위 리스트 등을 열거한 문서를 발간[참고2]

아 발간하고 있는데, 2020년 12월 발간된 Plum Book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부·입법부 및 정부기업 등을 통틀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수는 약 9,000여개로 추산되며, 現 Plum Book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 직위는 8개 기관에 104개 직위로 파악됨¹⁰⁾.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연계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제20대¹¹⁾, 제21대¹²⁾ 국회에서 발의되어 각각 법안소위¹³⁾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음.

제20대 국회 경제재정소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음.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자신과 철학을 공유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반면,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대통령과의 정책 철학의 공유보다는 자율·책임경영 보장을 통한 안정적 경영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10) 104개 직위 중 임기가 명기된 직위는 3개 직위임(미연방 주택금융청의 Director of Office는 임기가 5년이며, 신용협동조합감독청의 Chairman과 Board Member는 각각 임기가 6년, 4년임)

11) 김정우의원 대표발의(2019. 9. 11.) 의안번호 2022441

12) 이원욱의원 대표발의(2020. 11. 4.) 의안번호 2104943

정우택의원 대표발의(2022. 5. 27.) 의안번호 2115868

오기형의원 대표발의(2022. 7. 25.) 의안번호 2116646

김두관의원 대표발의(2022. 7. 25.) 의안번호 2116651

김성환의원 대표발의(2022. 8. 29.) 의안번호 2117040

13) 제371회 국회(정기회)제2차 경제재정소위(2019. 11. 14.)

제400회 국회(정기회)제1차 경제재정소위(2022. 12. 5.)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교체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제21대 국회 경제재정소위에서는 대통령 임기 교체시마다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입법 취지는 공감하며, 원내대표 간의 협의와 당내 협의에 따라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음.

2. 부칙 검토

현 행	개정안
○ (신 설)	○ <u>시행일</u> - 제21대 대통령 임기 시작일 ○ <u>적용례</u> -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적용

개정안은 제21대 대통령 임기 시작일을 시행일로 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제20대 대통령 때 임명된 임원은 임기를 유지하도록 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임기) 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u>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u> ,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제28조(임기) ① ----- ----- <u>기관장 및</u> ----- ----- ----- ----- ----- -----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u>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u>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③ ----- <u>기관장 및 이사와</u> ----- <u>감사는 1년에 한해</u> ----- -. -----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 ----- -----.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적용한다.

문의처
02)6788-5148

참고1

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2-07-29
이천시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1-11
용인시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2-9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2022-12-2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2-12-3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3-3-1
오산시	오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3-3-6
충청남도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3-3-1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3-4-10
경상남도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3-5-10
안산시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3-10-4
창원시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2024-7-15

참고2

미국 Plum Book 주요내용

- (개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과장급 이상), 독립기관 및 공공기관(기관장·상임이사·감사) 등 대상
 - ※근무지, 직위, 임명절차, 임기 등을 규정한 주요직위 리스트
- (주요직위) ①부처 및 그 소속기관, ②독립기관 및 ③공공기관
 - 직위 수는 약 9,000여개로 추산
- ① (부처(30개) 및 소속기관)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 * 연방법(US Code) 5. §104 - Independent establishment
- ② (독립기관) 정부조직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행정부에 속하지만 대통령실과 내각에는 속하지 않는 기관을 통칭
- ③ (공공기관) 美 연방법(US Code) 기준 27개, 美 회계감사원(GAO) 기준 22개로 되어 있으나, 現 Plum Book 上 8개 기관 104개 직위 등재

[Plum Book 內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 직위]

기관명	임명 형태								합계
	CA	NA	PA	PAS	SC	TA	XS	SES	
African Development Foundation	-	-	-	5	-	-	-	-	5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	-	-	17	-	-	18	-	35
Export-Import Bank	-	-	-	6	23	-	-	-	29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	-	4	2	-	-	-	6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	-	-	1	1	-	-	-	5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	-	-	3	9	-	-	-	12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	-	-	2	2	-	2	-	4
Tennessee Valley Authority	-	-	-	8	0	-	-	-	8
소 계	-	-	-	46	40	-	18	-	104

- (임명 형태) 대통령 임명직, 경력직·비경력직, 별정직 여부 등

구분		방법
CA	Career Appointment	· 공개 경쟁채용
NA	Noncareer Appointment	· 비경쟁채용, 전 임원 중 10% 이내
PA	Presidential Appointment without Senate Confirmation	· 대통령 임명(의회 동의 불요)
PAS	Presidential Appointment with Senate Confirmation	· 대통령 임명(의회 동의 필요)
SC	Schedule C Excepted Appointment	· 정치권 임명
TA	Limited Term Appointment	· 최대 3년, 연임불가/한시 프로젝트
XS	Appointment Excepted by Statute	· 별정직
SES	Senior Executive Service	· 대통령 임명 직위 차하위 직위

자료: 기획재정부

참고3

2024년도 공공기관 현황(327개)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8)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4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40)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4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학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주)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통계청) (재)한국통계정보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